

의안번호	제 78 호
의 결 연 월 일	년 월 일 (제 회)

충청북도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충 청 북 도 지 사
제출연월일	2022년 10월 5일

법무혁신담당관 심사를 마칩

# 충청북도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78
----------	----

제출연월일 : 2022년 10월 5일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 1. 제안사유

- 2021. 12. 7. 개정·시행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라 충청북도 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 수를 조정하고, 위원회 운영상 미비한 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 충청북도 보육정책위원회의 보다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위원의 수를 15명 이내에서 20명 이내로 늘리고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규정(안 제5조제1항)
- 위원이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기피신청 대상이 된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에서 회피하도록 의무를 부과(안 제10조의2제3항)

## 3. 의안전문 : 붙임

##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 5. 관계법령 발취 : 붙임

## 6. 비용추계서 : 붙임

충청북도조례 제            호

## 충청북도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15명”을 “20명”으로, “구성한다”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로 한다.

제10조의2제3항 중 “회피할 수 있다”를 “회피하여야 한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u>15명</u> 이내의 위원으로 <u>구성한다</u>.</p> <p>② ~ ④ (생략)</p> <p>제10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② (생략)</p> <p>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u>회피할 수 있다</u>.</p>	<p>제5조(구성) ① ----- ----- <u>20명</u> ----- <u>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u>.</p> <p>② ~ ④ (현행과 같음)</p> <p>제10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 ----- ----- <u>회피하여야 한다</u>.</p>

# 비용추계서

## 1. 사업개요

- 보육정책위원회 개최 및 운영
-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등 지역 내 보육에 관한 주요 시책 심의

## 2. 비용 발생 요인

- 충청북도보육정책위원회 운영

## 3. 관련조문

- 안 제5조(구성), 안 제11조(위원회 수당)

## 4. 비용 추계결과

가. 재정수반요인 : 충청북도보육정책위원회 운영 수당 지급

나. 추계의 전제 : 2022년 위원회 참석수당

(단위: 천원)

구분	합계	산출기초	비고
위원회 수당	8,000	- (출석수당) 20명×100천원×4회	

다. 추계결과 : '22년부터 향후 5년간 총 40,000천원 정도 소요

라. 재원조달방안 : 도비 100%

## 5. 연도별 비용추계서

(단위: 천원)

구분	계	1차년도 (2023년)	2차년도 (2024년)	3차년도 (2025년)	4차년도 (2026년)	5차년도 (2027년)
세출	40,000	8,000	8,000	8,000	8,000	8,000
위원회 수당	40,000	8,000	8,000	8,000	8,000	8,000

※ 정책기획관 위원회 POOL 수당에서 지급

## 6. 작성자 : 보건복지국 복지정책과장 서동경

## 관련법령 발췌

###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6조(보육정책위원회)** ①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본문에 따라 보건복지부에 두는 중앙보육정책위원회(이하 “중앙보육정책위원회”라 한다)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두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이하 “지방보육정책위원회”라 한다)는 각각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제10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각 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각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